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0.

아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 공사위치: 아산시 남부지역 일원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공사내용: 하수시설물 긴급보수공사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간
- 추정금액: 100,000,000원 【도급액: 100,000,000원】
- 기초금액: 100,000,000원 【추정가격: 90,909,091원 + 부가세: 9,090,909원】
 - ※ 기초단가: 15,325,380원
 -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단독계약,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6076)**

6. 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8. 10.(월) 19:00 ~ 2026. 8. 14.(금)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나, 입찰서 내 중요한 입력사항(입찰 금액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되며 제출자는 해당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6. 8. 14.(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4:00**이고, 개찰일시는 **익일 15:00**입니다(단, 익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다음일로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pm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익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803,973원**

○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여 추천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 사업 특성상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동일 업체가 2개 이상 권역의 사업에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공고번호 앞 번호부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선(先) 권역 낙찰자는 후(後)권역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후 개찰을 진행합니다.**

※ 먼저 낙찰된 업체가 이후 입찰에서 선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 찰 순 서 -

순번	공 고 명	기초금액 (원)	공고 번호
1	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남부지역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100,000,000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2호
2	2026년도 하반기 아산시 북부지역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100,000,000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73호

8. 결과 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같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아래 내용은 견적서 제출 무효 대상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 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견적 제출에 참여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도 포함) 해당 견적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4호).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5호)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는 지급 청구 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기초단가 기준)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8,620	236,007	23,470	114,278	251,598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해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에 따라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을 갖추고 보건조치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사항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 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출·퇴근 시 해당 전자카드를 이용하도록 교육·관리**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약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약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공사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회계예규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견적서 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 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 (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6076)
-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과 「개찰결과」 에 게재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